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한상균 소유물건
(2025타경507174)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상규

감정평가서번호: 오름2502-05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름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김 수 경

감정평가액	오천삼백만원정 (₩53,000,000.-)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상규		감정평가 목 적	법원경매		
제출처	인천지방법원 경매11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한상균 (2025타경507174)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5.02.27	2025.02.27	2025.03.03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1세대 이	구분건물	1세대 하 여	- 백	53,000,000
	합 계					₩53,000,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 감 정 평 가 사 (인) 명 성 속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 감정평가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뢰한 부동산강제경매(사건:2025타경507174, 소유자:한상균, 소재지: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67-5외 3층 302호(현황'세진빌라') 구분건물)를 위한 경매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 기준

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제반 감정평가 관련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가. 대상 물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였음.

※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가치라 함.

나.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 없음.

5.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2월 27일 기준시점으로 결정함.

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위한 실지조사는 2025. 02. 27.에 시행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하고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7. 감정평가 방법

가. 개요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의 도출이 요구되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 ① 대상 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 ② 대상 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
- ③ 대상 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
- ④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나. 구분소유 부동산

(1)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근거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동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구분소유 부동산의 전유부분^{*1)}과 대지사용권^{*2)}은 일체성을 가지는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음.

*1) 전유부분(專有部分)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2) 대지사용권 :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적용 평가방법

① 거래사례비교법

대상 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② 시산가액 조정

대상 물건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원가법, 수익환원법)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대상 물건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로 주된 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7. 기타 참고사항

가. 대상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을 기준하되 현황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제반 관련 공부를 기준하였으며, 이용상태 등은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한 사항을 근거로 표준 설비, 외부관찰 등을 참조하였으며, 대상 물건의 위치확인인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 및 현장조사에 의거하였으며, 본건은 공부상 면적 및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

나. 구분소유 부동산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일괄하여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평가목적에 따른 귀 요청에 의거 합리적인 기준^{*1)}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명세표에 표시하였으며, 해당 배분가격은 본 감정평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람.

*1) 집합건물 토지 . 건물 배분 비율표(한국부동산연구원) 참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대상 물건의 개요

1. 대상 물건이 속한 건물의 개요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67-5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18번길 9				
건물 명칭	(현황 '세진빌라')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주용도	공동주택	사용승인일	1993.03.04		
층수	지하1층/지상3층	호 수 (호/가구/세대)	-호/-가구/12세대 (-호/-가구/20세대)		
주차시설	-	승강기대수	-		
집합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대지면적*1)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422.0	157.72	-	413.46	-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면적의 합임.

2. 대상물건의 개요

기 호	층 / 호	용 도	건물면적(㎡)				대지권면적 (㎡)	비 고
			전 유	공 용*1)	공급(계)	전용률 (%)		
1	(현황 '세진빌라') 3층 302호	다세대주택	42.17	0	42.17	100	34.79	

*1) 공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상 등재된 공용부분 중 “주, 부”의 합산 면적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Ⅲ.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산출 개요

대상 물건에 대한 가격결정은 부근지대의 상황, 제반 입지조건, 교통 및 접근조건 등과 건물의 구조, 규모, 용재, 부대설비, 층·향·위치별 효용도 및 동 유형·유사형 물건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수준, 기타 가치형 성상의 제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

나. 참고가격자료 등

(1) 인근지역 내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

기 호	구 분	소재지 및 건물명, 층/호수	이용상황	전유면적 (㎡)	매매가액 (원)	단가 (원/㎡,전유)	거래시점
							사용승인년
1	실거래	강화읍 국화리 16□-□ □□빌라 2층 20□호	공동주택	68.76	82,000,000	1,192,554	2024.09.25
							1991년
2	실거래	강화읍 국화리 16□-□ □□빌라 2층 20□호	공동주택	42.17	53,000,000	1,256,818	2024.11.19
							1993년

*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AIS.

(2) 인근지역 내 유사 부동산의 평가사례

기 호	구 분	소재지 및 건물명, 층/호수	이용상황	전유면적 (㎡)	감정가액 (원)	단가 (원/㎡,전유)	기준시점
							사용승인년
3	담보	강화읍 국화리 16□-□ □□빌라 2층 20□호	공동주택	49.9	72,000,000	1,442,886	2022.03.28
							1991년

*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APA DB.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인근지역 내 대상물건 및 동유형 부동산의 가격수준

구 분	가격수준	비 고
다세대주택 (42.17㎡/전유)	약 53,000,000원 수준임.	-

다. 비교거래사례의 선정

기준시점 이전 거래사례로서 대상 물건과 제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 #2>을(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라.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 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사례는 거래당사자간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됨. (1.00)

마.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결정함.

$$\text{시점수정치} = \frac{\text{대상 부동산의 기준시점 가격지수}}{\text{사례의 매매시점 가격지수}} : 95.6/96.2 \approx 0.99376$$

※ 인천광역시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 (2015.6=100.0)

2024.11.19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4년10월) : 96.2
2025.02.27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5년01월) : 95.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가치형성요인 비교

요인구분	세부항목(주거용)	격차율		비 고
		대상	사례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 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100	100	대체로 유사함.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 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100	100	대체로 유사함.
호별 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100	100	대체로 유사함.
기타 요인	장래의 동향, 기타	100	100	대체로 유사함.
누 계	1.00 × 1.00 × 1.00 × 1.00 =	1.000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구 분	거래사례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면적비교 ^{*1)}		산출가액 (원)	적용가액 (원)	비 고
	기호	매매가액				대상	사례			
1	2	53,000,000	1.000	0.99376	1.000	42.17	42.17	52,669,280	53,000,000	

*1) 면적비교 = 본건 전유면적 / 사례 전유면적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정평가액의 결정

가. 시산가액

구 분		전유면적 (㎡)	감정평가액 (원)	비 고
기 호	층/호			
1	(현황 '세진빌라') 3층 302호	42.17	53,000,000	
합 계			₩53,000,000	

나.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법(원가법, 수익환원 법)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대상 물건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로 주된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으며, 인근 동유형 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선례 등 참고가격자료를 참작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의 결정 의견

1. 감정평가액

구 분		전유면적 (㎡)	감정평가액 (원)	비 고
기 호	층/호			
1	(현황 '세진빌라') 3층 302호	42.17	53,000,000	
합 계			₩53,000,000	

2. 결정의견

대상 물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인근 동유형 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선례 등 참고가격자료를 참작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감정평가액 :53,000,000원)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1동의 건물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표시) 167-5, 168	다세대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168-2추가		
					1층	98.02	㎡				
					2층	157.72	㎡				
					3층	157.72	㎡				
					지하	98.02	㎡				
	(대지권의 목적 1. "	인 토지 167-5	의 표시) 전	제2종일반 주거지역		84	㎡		"대"		
					2. "	168	대	"		251	㎡
					3. "	168-2	대	"		87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3층302호		42.17	42.17	-	53,000,000	비준가격	
					1,2,3. 소유권 대지권	422분의 34.79	34.79				
합 계								₩53,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5. 설비내역 | 9. 공부와의 차이 |
| 2. 교통 상황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10. 임대관계 및 기타 참고사항 |
| 3. 건물의 구조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4. 이용상태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당해 부동산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소재 '강화고등학교' 동측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으로서 주위는 동유형의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무난한 편임.

2. 교통 상황

당해 부동산까지 차량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등 제반 대중교통여건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건으로(사용승인일:1993.03.04),

외벽 : 치장벽돌쌓기.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 붙임마감.

창호 : PVC 이중 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구분건물요항표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 등

대상 토지 남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에 한면이 접하여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로서

기호(1~3)공히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2016-06-08)(강화고등학교)<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사적_강화산성(통합고시))<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형문화유산_강화석수문)<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공부와의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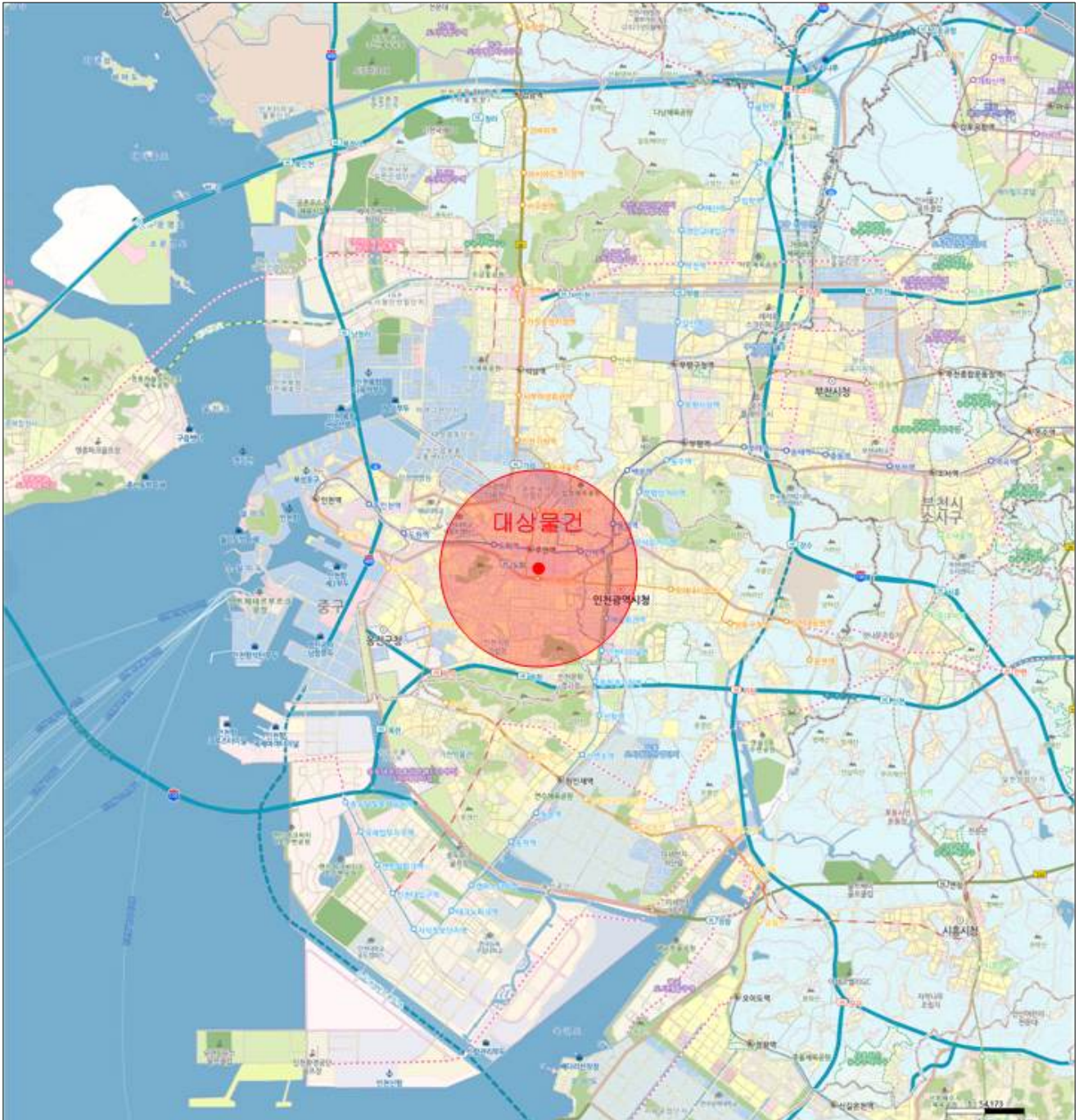
10. 임대관계 및 기타 참고사항

- 임대 내역 미상임.

광역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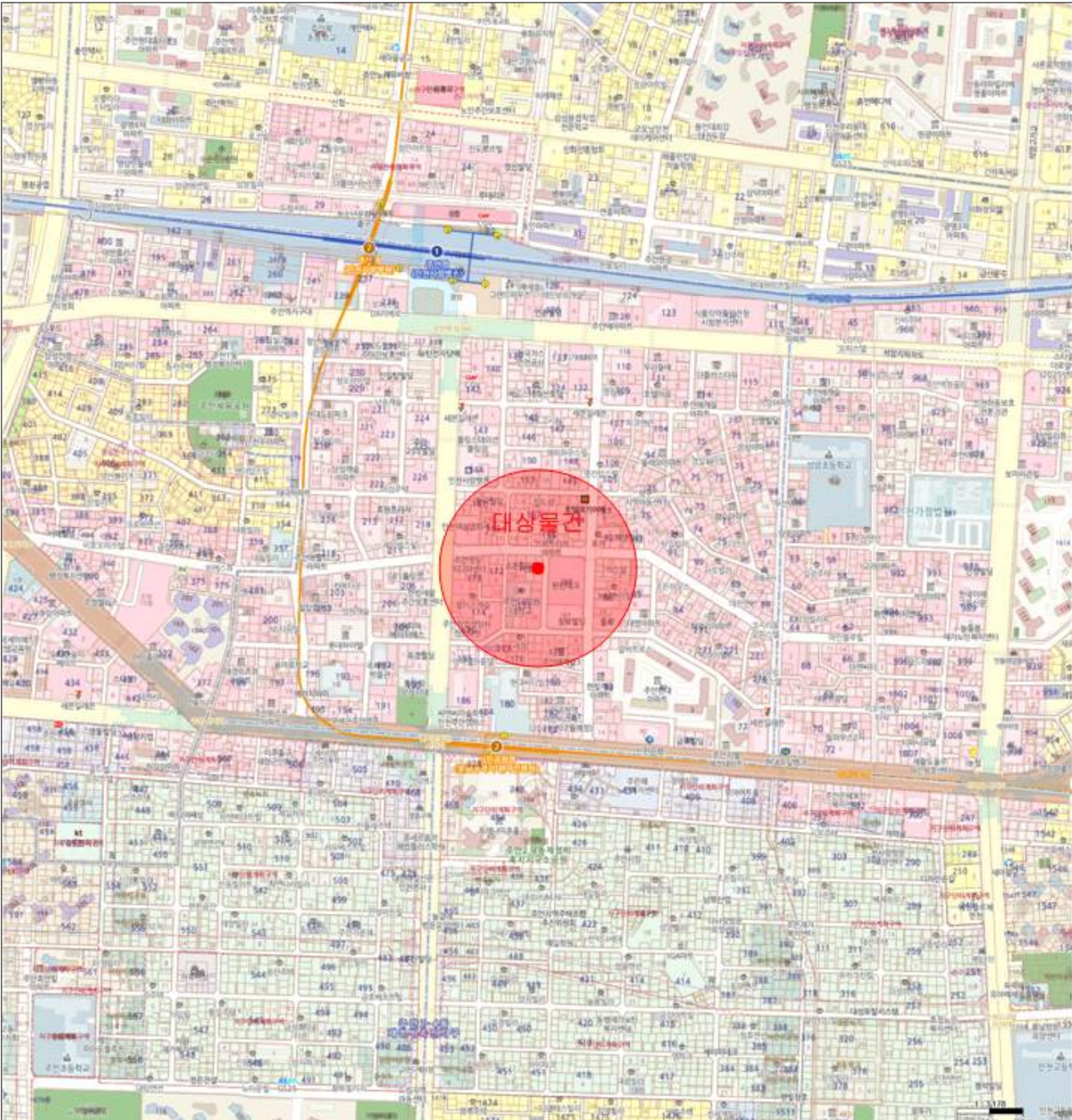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67-5외 3층 302호(현황'세진빌라')



상 세 위 치 도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67-5외 3층 302호(현황'세진빌라')
-----	--



사 진 용 지

소 재 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67-5외 3층 302호(현황'세진빌라')
-------	--



전경 : 『 남동측 』에서 촬영

사 진 용 지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67-5외 3층 302호(현황'세진빌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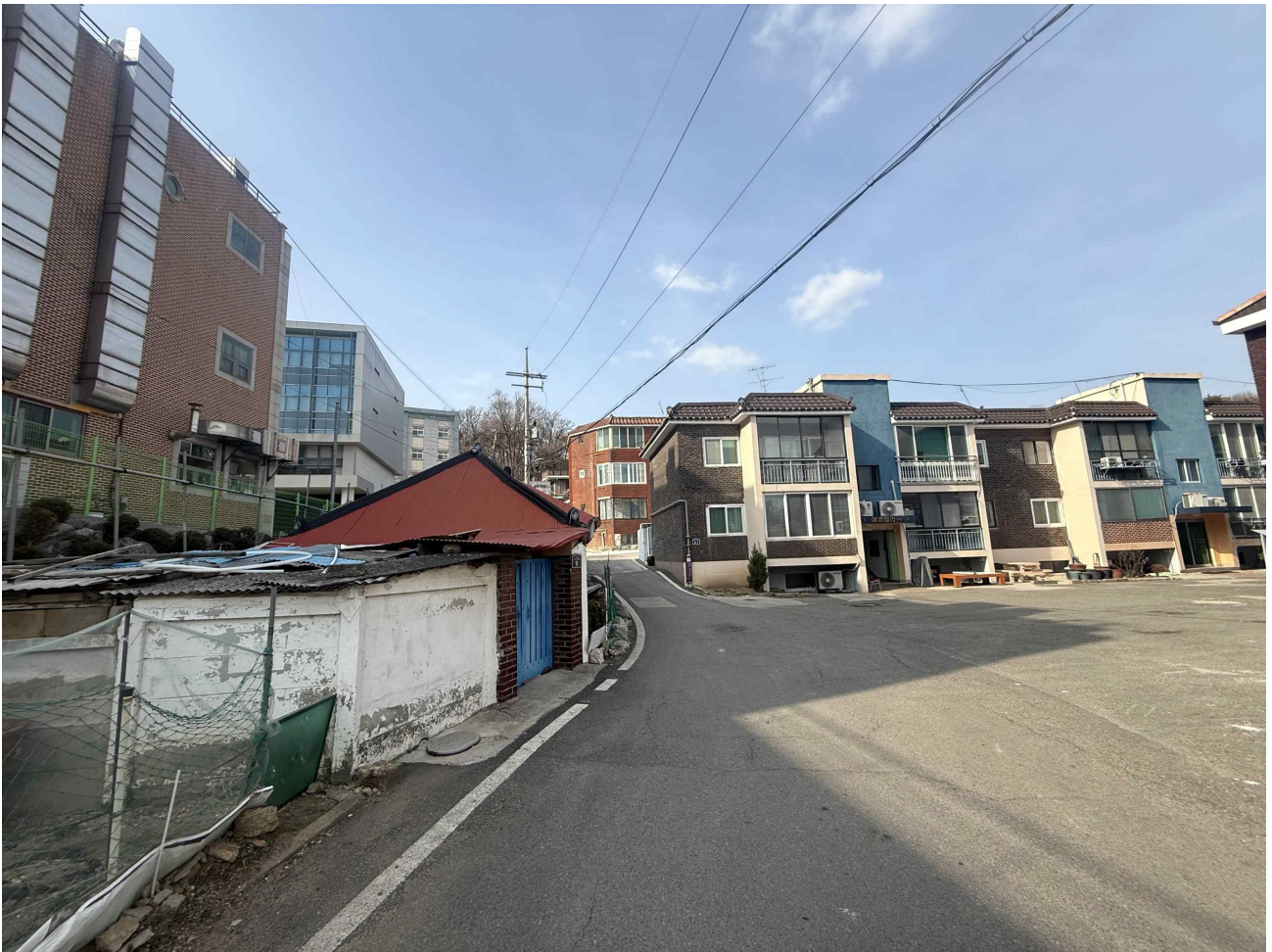


호전면

사 진 용 지

소 재 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67-5외 3층 302호(현황'세진빌라')



원경 : 『 남측 』 에서 촬영